

과징금의 산정기준(제25조의4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운영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목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에 라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.
- 다. 운영정지 기간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간(늘리거나 줄이는 경우에는 늘거나 줄여든 기간을 말한다)을 말한다.
- 라.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어린이집의 연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.
- 마. 연간 총수입금액은 법 3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하여 지원한 비용,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더하여 산정한다.
- 바. 연간 총수입금액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연도의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어린이집의 신규설치, 운영 중단 등으로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전년도 1년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, 월별 또는 일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조정한다.
- 사. 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.

2. 과징금의 산정방법

등급	연간 총수입금액 (단위: 백만원)	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(단위: 원)
1	30 미만	10,000
2	30 이상 ~ 60 미만	30,000
3	60 이상 ~ 100 미만	53,000
4	100 이상 ~ 200 미만	70,000
5	200 이상 ~ 300 미만	85,000
6	300 이상 ~ 400 미만	100,000
7	400 이상 ~ 500 미만	115,000
8	500 이상 ~ 600 미만	130,000

9	600 이상 ~ 700 미만	145,000
10	700 이상 ~ 800 미만	164,000
11	800 이상 ~ 900 미만	186,000
12	900 이상 ~ 1,000 미만	208,000
13	1,000 이상 ~ 1,100 미만	230,000
14	1,100 이상 ~ 1,200 미만	252,000
15	1,200 이상 ~ 1,300 미만	274,000
16	1,300 이상 ~ 1,400 미만	296,000
17	1,400 이상 ~ 1,500 미만	318,000
18	1,500 이상 ~ 1,600 미만	340,000
19	1,600 이상 ~ 1,700 미만	362,000
20	1,700 이상 ~ 1,800 미만	383,000
21	1,800 이상 ~ 1,900 미만	405,000
22	1,900 이상 ~ 2,000 미만	427,000
23	2,000 이상	438,000